

[별표 4] <개정 2009.6.26>

경비·검색인력 및 보안시설·장비의 세부기준(제38조 관련)

구분	세부 기준
경비·검색인력	<p>1. 다음 각 목에 따른 부두 출입구에는 경비·검색인력으로 「청원경찰법」에 따른 청원경찰 또는 「경비업법」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특수경비원을 1명 이상 상시 배치한다.</p> <p>가. 부두의 주된 출입구</p> <p>나. 주된 출입구 외에 사람과 차량이 상시 출입하는 그 밖의 출입구</p> <p>2. 「보안업무규정」 제36조에 따른 보안목표시설 외의 항만시설에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적용하여 제1호의 경비·검색인력을 배치한다.</p> <p>가. 야간에 국제항해선박의 이용이 없고 폐쇄회로 텔레비전(CCTV)에 의한 감시·녹화가 가능한 경우에는 주간에만 배치</p> <p>나. 국제항해선박의 이용이 연 90일 미만인 경우에는 경비·검색인력을 상시 배치하지 아니하고 선박이 계류 중일 때에만 배치</p> <p>3. 국제항해여객선이 취항하는 국제여객터미널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에 따른 경비·검색인력 외에 그 국제여객터미널에서 출항수속을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3명 이상의 검색인력을 추가로 배치한다.</p>
보안시설 (외곽 울타리·담 또는 장벽)	<p>1. 법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역의 항만시설소유자는 그 지역을 보호하기 위하여 울타리, 담 또는 장벽(이하 이 표에서 “울타리등”이라 한다)을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.</p> <p>가. 높이는 2.7m 이상으로 할 것</p> <p>나. 울타리등의 하단과 지면의 간격은 50mm(배수시설의 설치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에는 200mm) 이하로 할 것</p> <p>다. 울타리등의 상단에는 윤행철조망 등 장애물을 설치할 것</p> <p>라. 울타리등의 지주는 지하 900mm 이상 깊이로 묻을 것(지하 시설 또는 암반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에는 400mm 이상의 깊이로 묻고 콘크리트 등으로 보강할 것)</p>

	<p>2. 제1호에도 불구하고 낭떠러지 등 자연의 방어벽, 안벽 등 계류시설 또는 다른 항만시설과 인접하여 울타리등을 설치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아니한다.</p> <p>3. 항만친수시설, 도심과 인접한 지역 및 관광지 등의 경우 항만보안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에서 제1호다목에 따른 유행철조망 등 장애물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.</p>
<p>보안시설 (조명시설)</p>	<p>1. 항만시설(육상구역에만 해당한다)의 출입구, 선박계류지역, 야적장 및 울타리등에는 지면과 같은 높이에서 2럭스(Lux)이상의 조도가 유지되도록 조명등(보안등)을 설치한다.</p> <p>2. 조명등(보안등)은 해가 질 때부터 해가 뜰 때까지 상시 조명되도록 하되, 야간출입을 금지하는 경우에는 조명등을 켜지 아니할 수 있다.</p>
<p>보안장비 (폐쇄회로 텔레비전)</p>	<p>1. 다음 각 목의 지역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(CCTV)을 설치한다. 가. 국제여객터미널의 여객 대기지역 나. 법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역에 설치하는 울타리등</p> <p>2. 제1호에 따라 폐쇄회로 텔레비전(CCTV)을 설치할 때에는 감시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, 모든 폐쇄회로 텔레비전(CCTV) 녹화기록은 10일 이상 보관한다.</p>
<p>보안장비 (금속 탐지기, 검색경)</p>	<p>1. 부두의 주된 출입구와 그 밖에 상시 출입이 이루어지는 출입구에는 대인 검색용 문형 또는 휴대용 금속탐지기를 1대 이상 갖추어 둔다.</p> <p>2. 부두의 차량 출입구에는 검색경 등 차량 하부 검색장비를 1대 이상 갖추어 두거나 설치한다.</p>
<p>보안장비 (철침판, 방지턱, 차단기)</p>	<p>부두의 주된 출입구에는 차량의 무단 진입을 차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장애물을 설치·운영한다.</p> <p>1. 철침판 또는 차량돌진 방지턱 1개 이상</p> <p>2. 차량 통과를 차단할 수 있는 철제차단기(Barricade) 1개 이상</p> <p>3. 그 밖에 모래, 화분대 등 미관을 고려한 장애물 1개 이상</p>
<p>보안장비 (통신장비)</p>	<p>근무 중 경비·검색인력 간 또는 항만시설소유자 또는 항만시설보안책임자 간에 비상 연락할 수 있는 통신장비를 보유한다.</p>